

조선 주둔 일본군의 실상: 치안·방위·제국

도베 료이치(戶部 良一)

I. 들어가며
II. 주둔군의 변천
III. 군사행동

IV. 조선인 지원병제와 징병제
V. 나오며

I. 들어가며

군대의 주요 기능은 외적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과 국내 치안유지에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 군대에는 여기에 '제국확장의 침병'이라는 기능이 덧붙여진다. 이는 식민지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¹⁾. 단지 식민지군의 경우, 대처해야 할 외적 위협이란 반드시 식민지 자체에 대한 위협은 아니며 본국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의 치안유지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본국에 있어서의 치안유지, 즉 식민지체제의 유지를 말한다. 제국확장이라고 할 때의 '제국' 또한 본국에 다름없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위의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시되었는가? 각각의 기능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실행되었던가?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지 통치와의 관련을 의식하면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사는 실질적으로는 1904년 3월, 러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편성된 한국주차군(駐紮軍)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공사관 호위 혹은 거류민 보호, 전신선 보호를 위해 소규모 군대를 주둔시킨 적은 있지만 주둔군과 식민지통치와의 관련성은 한국주차군 설치 이후에 명확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1910년 8월, 한국주차군은 한일병합에 따라 조선주차군으로 개편되어 1918년 6월, 조선군으로 개칭되었다. 이를 전후해서 그때까지의 본국 파견 1개 사단에 의한 2년 주둔 교대제에서 2개 사단 상비제로 바뀌어 상주사단으로서 1916년 4월에 제19사단, 1919년 4월에 제20사단이 설치되었다. 당분간 이 편제가 계속되었지만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1) 아키타 시게루(秋田茂)는 영국 식민지시대의 인도군(소위 영인군)에 대해 이 세가지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아키타 시게루, 2003년, 《영국제국과 아시아 국제질서》 나고야(名古屋)대학출판회, 35-36쪽.

개전 후에는 전시 요구에 따라 사단이 증설되었고, 1945년 2월, 조선군을 폐지하고 야전부대로서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는 제17방면군(方面軍)과 보충·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선군관구가 설치되었다. 패전과 더불어 조선 주둔 일본군은 모두 복원(復員), 해체되었다.

이상의 약 40년에 걸친 조선 주둔 일본군 가운데, 본고에서는 한일병합 이후의 조선주차군 시기와 조선군 시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둔 일본군이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병합 이전에 관해서는 이른바 전사(前史)로서 다루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또한 대동아전쟁 개전 후, 특히 전쟁 말기에 대해서는 패전을 피할 수 없게 된 특수상황에 있었음을 고려해 직접적 고찰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이하 제II절에서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편제, 병력규모, 배치, 연습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역할의 중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대외방위, 치안유지, 제국확장 가운데 어디에 중점이 놓여있었는지에 관해서 부대 편성과 배치 상황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제III절에서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사행동을 고찰하기로 한다. 일본군은 식민지 조선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그 기능의 중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어 제IV절에서는 1920년대부터 논의되어 1938년에 도입된 조선인 지원병제도에 착목하여 그 제도가 채용되기까지의 경위와 제도 실시 후의 실태를 통해 조선 주둔 일본군과 식민지 통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세절을 정리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는 진해 요항부 등 해군부대도 주둔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육군 부대에만 국한시킨다.

II. 주둔군의 변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주둔 일본군의 첫 등장은 1904년 3월 일본에서 편성되어 같은 해 4월에 서울에 설치된 한국주차군이였다. 당초에는 후비병 5개 대대로 구성되었다가 같은 해 9월 러일전쟁의 전개와 더불어 일부 강화되어 군사령관은 천황의 직속이 되었다. 대 러시아 작전의 배후지이자 병사 및 무기탄약의 수송 루트인 한국에서의 치안유지와 일본군에 대한 협력 확보가 그 주된 임무였다. 1896년부터 한국에서 군용 전신 보호 임무에 임하고 있던 임시헌병대도 한국주차헌병대로 개칭되어 주차군 사령부의 지휘 하에 들어가 군사경찰권을 행사하였다.

러일전쟁 종료 후인 1905년10월, 전쟁 중에 신설된 제13사단과 제15사단이 주차군 사령부 예하에 들어갔다. 그 임무는 대러시아 전쟁에 다시 대비할 것과 한국의 보호국화 추진상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제13사단은 현역병 중심으로 사할린(樺太)수비, 대만수비에 종사한 후 한국에 파견되어 함경도에 주둔했다. 제15사단은 응소(應召) 보충병 중심으로 함경도 이외의 각지에 분산 주둔 했다²⁾. 단적으로 말하자면, 제13사단은 러시아와의 후속 전쟁에 대비하였고, 제15사단은 치안유지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1906년 8월, 한국주차군 사령부 조례가 제정되어 동 주차군은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로 전환

2) 오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1993년. <山縣系와 식민지 무단 정치>. 《이와나미 강좌 근대일본과 식민지 4》 도쿄대학출판회, 24쪽

되었다. 이듬해 1907년 2월에는 주둔사단을 1개 사단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제15사단이 본국으로 귀환했다. 평시편제로의 전환과 주둔사단의 삭감이 실시된 것은 러일 간의 전쟁 재발의 위협성이 낮아졌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치안이 나름대로 확보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이른바 헤이그 밀사사건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 황제를 퇴위시키고 나아가 한국군대를 해산시키자 의병운동이라 불리는 반일 무력저항이 전개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본국으로부터 보병 1개 여단과 기병 4개 중대를 임시 파견했으며, 나아가 보병 2개 연대를 증파하여 경비 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즈음 주차헌병대의 인원이 급격히 증가된 점이다. 1906년에 300명이 안 되던 주차헌병대의 인원이 1907년에 800명, 1908년에는 약2400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1908년 6월에는 조선인 헌병 보조원 모집도 시작되어 그 수까지 합하면 헌병대 인원수는 6600명이 넘었다³⁾. 헌병대 증원도 보조원 모집도 의병운동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1909년 5월, 임시한국파견대 제도가 제정되었다. 임시파견대는 그 때까지 임시적으로 증파되고 있던 부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본국의 각 보병연대에서 1개 중대(약150명)를 차출해 2개 연대가 편성되어(1개 연대는 3개 대대, 1개 대대는 4개 중대), 매년 그 반 수(3개 대대)가 교대했다. 또한 이 때 주둔사단은 2년마다 교대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의 부대 배치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사단사령부(당시 제6사단)는 용산에 두고, 그 중 1개 여단은 사령부를 나남에 두어 함경도에 주둔시키고, 또 하나의 1개 여단은 사령부를 평양에 두어 함경도 이외의 한국 북부에 주둔케 하며, 임시파견대는 대구에 사령부를 두어 한국 남부에 주둔했다⁴⁾. 모두 담당 지구에서의 분산 배치로 치안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듬해 한일병합이 실행될 즈음해 무력저항이 고양되는 것을 두려워한 육군은 2년간의 주둔 임무를 마친 제6사단의 본국 귀환을 늦추어 새로 파견되어온 제2사단과 중복 주둔시켜 일시적으로 2개 사단과 임시파견대의 병력으로 치안을 확보하려하였다. 분산 배치되어 있던 부대의 일부는 서울 가까운 곳에 집중시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했다. 통감부는 한국의 경찰기관을 접수했다. 또한 헌병대가 군사경찰 뿐 아니라 보통경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통감부의 경무총장을 헌병대 사령관이, 지방 각도의 경무부장을 각지의 헌병대장이 각각 겸임했다. 일본에서는 1000명의 헌병이 증파되어 헌병대 총수는 보조원을 포함해 약7800명이 됐다.

한일병합에 따라 한국주차군은 조선주차군으로, 임시한국파견대는 임시조선파견대로, 한국주차헌병대는 조선주차헌병대로 각각 개칭됐다. 헌병대는 계속해서 보통경찰 직무도 담당했고, 조선 각지에는 헌병파견소와 출장소가 그물망처럼 설치됐다. 1914년 현재, 헌병대 13개, 헌병분대 78개, 분견소(分遣所) 99개, 파견소 317개, 출장소 528개에 이르렀다⁵⁾. 이들 헌병 주둔지는 군사기지의 소재지, 국경지구, ‘폭도’가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산간벽지’에 설치됐다⁶⁾. 당시 보조원을 포함한 조선주차헌병대 인원이 거의 8,000명(이 가운데 정규 일본인 헌병은 약 3,500명)인데 비해, 일본본국의 헌병 총수는 1,000명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다⁷⁾. 병합 전후 시기의 조선에서

3) 마즈다 토시히코(松田利彦). 2004년. <해설 조선헌병대 소사> 《조선헌병대 역사 제1권》 후지(不二)출판, 4-5쪽.

4) 진계, 大江 ‘山縣과 식민지무단정치’ 25쪽

5) 고모리 토쿠지(小森徳治), 1968년, 《아카시모토지로(明石元次郎)상권》 복각판, 하라쇼보(原書房), 481쪽.

6) 상동, 450쪽.

헌병대의 존재와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단, 일본군에 상시 이 정도의 헌병이 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하사관, 상등병 중에서 헌병희망자를 모집하여 임시로 속성 교육하여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니⁸⁾ 그 질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즈음 육군은 2개 사단증설을 강하게 요구하여 그것이 1912년에 정치적 위기를 일으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1907년에 정해진 제국국방방침에서 육군의 소요 병력량은 평시 25개 사단(전시 50개 사단)으로 되어 있으나, 러일전쟁 중에 임시 증설된 4개 사단을 상설화하고 더욱이 전후 2개 사단을 증설해간 육군에게 있어서 우선은 이 19개사단체제로 충분할 터였다. 그러나 드레드노트함의 출현에 놀란 해군이 주력함의 근대화를 위해 예산 확대를 요구하자, 이에 자극받은 것처럼 육군도 사단 증설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⁹⁾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시베리아철도의 복선화, 흑룡강철도의 건설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위협 증대가 능성이었고, 신해혁명 후의 중국 정세의 유동화였다.¹⁰⁾

증설되어야 할 2개 사단을 조선에 두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조선에 2년 교대로 1개 사단의 수비대를 파견하는 현행 체제는 우선 교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부대는 100개소 이상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견제(본래의 기준에 의한 편제)가 붕괴되고 있고, 평시의 교육·훈련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유사시에는 동원·집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초기 작전에 이용할 수가 없다. 러일이 충돌할 경우의 작전지역으로 종래는 북부조선과 북만주가 고려되었으나, 중국의 불안정화에 따라 몽고와 화북의 직에 평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현재 상태로서도 국방에 필요한 병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위험성이 있다.¹¹⁾

이와 같이 사단증설 이유는 오로지 대러시아전을 위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 후 1915년, 결국 조선 2개 사단 증설이 인정되어 본국 각 사단으로부터 부대가 차출되어 1916년 4월에 제19사단의 주력과 제20사단의 일부가, 1919년 4월부터 1921년 4월에 걸쳐 그 외의 부대가 편성되게 되었다.¹²⁾ 이후 양사단의 병사는 일본전국 각지에서 징병되었다.

양사단의 배치를 살펴보자. 제19사단은 사단 사령부를 나남에 두고 이곳에 38여단사령부, 제73연대, 제76연대를, 함흥에는 제37여단 사령부와 제74연대를, 회령에는 제75연대를 두었다. 제20사단은 사령부를 용산에 두었고 여기에 제40여단 사령부(동 여단은 당초 임시조선파견대를 재편하여 편성되었다)와 제78연대, 제79연대를, 평양에 제39여단 사령부와 제77연대를, 대구에 제80연대를 두었다. 제19사단이 함경도에 배치되고 제20사단이 평안도 및 그 외의 지역에 배치되었다. 다소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제19사단이 두만강 연안의 국경방위를, 제20사단이 압록강 연안의 국경방위와 그 밖의 지역 전반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사이 1918년 5월 말, 조선군사령부 조례가 제정되어 조선주차군은 조선군으로, 조선주차헌병대

7) 전계, 松田 ‘해설 조선헌병대소사’ 2쪽, 8쪽.

8) 후루노 나오야(古野直也) 1990년. 《조선군사령부 1904~1945》 國書刊行會, 172쪽.

9) 고바야시 미치히코(小林道彦), 1996년, 《일본의 대륙정책 1895~1914》 南窓社, 148-149쪽.

10)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1978년,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도쿄대학출판회, 126-127쪽.

11) 육군성사무국. <2사단증설이유서> 《2개사단증설이유서·동소요액조》 방위연구소도서관장.

12) <제19, 제20사단, 항공대대신설 및 치중병대대, 전신대편제개정요령제정의 건> 《육군성밀대일기》 다이쇼4년 제1책 제19호. 이하 《육군성밀대일기》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것이다.

는 조선헌병대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선상에서 발생한 것이 1919년 3월의 이른바 만세사건, 3·1독립운동이었다. 2개 사단은 아직 편성 도중에 있었고 더욱이 교육의 편의에 따라 부대집중을 진행시켜 종래의 분산 배치가 철폐되고 있었다. 편성할 틈도 없는 1개 사단 반의 병력은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허를 찔렸던 것이다.

당시의 하라(原)내각은 사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조선통치에 몇 가지 개혁을 실시하며 ‘무단정치’의 제도수정을 시도했다. 그 중 하나가 같은 해 8월에 이루어진 조선총독부관제의 개정이다. 이에 따라 총독의 임용자격이 무관에서 문관으로 확장되었으나, 문관의 총독 취임 가능성을 짐작하여 그때까지 총독에 위임했던 조선주둔군의 통솔권은 소멸했다.¹³⁾ 그 대신 총독에게는 조선의 안녕 유지를 위한 병력 사용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되었다.

헌병대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조선헌병대는 보통경찰의 직무에서 제외되어 군사경찰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원을 포함하여 8,000명이 넘는 인원이 1919년 말에는 약 1,200명(이 중 헌병보조원은 헌병보로 개칭되어 약 300명)으로 격감하였다. 조선헌병대에는 국경보호라는 독자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1922년 5월 제도 개정에 따라 폐지되어, 같은 해 말에는 인원이 700명으로 감소하였다.¹⁴⁾ 헌병대의 삭감은 ‘무단정치’를 대신하는 ‘문화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물론 1919년의 시점에서 헌병과 경찰관의 합계는 14,000명을 넘었으나, 1920년에는 경찰관만으로 2만 명을 넘어, 일본인 경찰관이 대량으로 채용되었던 점을 경시할 수 없다.¹⁵⁾ 또한, 보조원을 포함하여 헌병에서 경찰관으로 전직한 자도 많았다. 조선통치가 강력한 경찰력을 배후에 갖는 강권적인 식민지배였다는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헌병대라는 군대가 통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경찰에서는 군대식 훈련이 실시되었고 국경 경비를 중시해 총기도 경찰로서는 강력한 것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특히 국경 주변에서 발생하는 ‘반란’ 사건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2개 사단에하 보병연대의 정원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 후 본국의 군비 정리(군축)에 따라, 일부에서는 증가정원에 의한 수비대를 철폐하기도 하였으나,¹⁶⁾ 국경수비 부대에는 정원 증가가 계속적으로 인정되어 1924년 현재 정원 증가는 제74, 제75, 제76, 제77, 제78의 5개 연대를 통틀어 합계 2,000명에 이르렀다.¹⁷⁾

1926년 현재, 국경 지대에는 6개의 수비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상술한 5개 연대와 제73연대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제19사단의 제1부터 제4까지의 수비대는 경원, 무산, 혜산진에 본부를 두고 (제2수비대에는 본부가 없었음), 제20사단의 제1수비대는 강계에, 제2수비대는 신의주에 본부를 두었다.¹⁸⁾

그러나 이것으로도 조선 병력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문화정치’를 표방한 총독 사이토

13) <조선총독 및 대만총독에 위임사항에 관한 건>. 상동. 다이쇼8년 제1책 제16호.

14) 전개. 마츠다. 《해설 조선헌병대소사》 11-13쪽.

15) 가스야 겐이치(糟谷憲一). 1992년.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이와나미강좌 근대일본과 식민지 2》 도쿄대학출판회. 151쪽.

16) <선내수비대정리완료에 관한 건 보고> 《육군성필대일기》 다이쇼12년 제1책 제7호.

17) <제19, 제20사단보병연대증정원충족에 관한 특별규정의 건>. 상동. 다이쇼14년 제1책 제2호.

18) <제19사단보병연대증정원배속환 및 조선군사령부 편제개정에 관한 의견제출의 건>. 상동. 다이쇼15년 제5호.

마코토(齋藤實)(예비역 해군대장)는 취임(1919년 8월)하자마자 사단 증설을 본국에 요청하고 있다. 사이토에 의하면, 만세사건 이래 조선 각지의 민심은 안정성이 결여됐고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오만’해졌다. 조선인은 민족 자결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 독립 또는 자치를 주장하고, 일본에 대한 복수를 제창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통치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국의 위풍’을 보이면서 선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논거에 기초하여 사이토는 ‘제국의 위풍’을 보이기 위해서 내지로부터 몇 개 사단의 조선 이전을 제의하였다.¹⁹⁾ 사이토의 요청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재조선 보병연대의 고 정원화가 계속된 것은 이러한 총독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다.

사이토 총독은 4년 후의 1923년에도 사단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19사단은 대소 국경방위에 대비하고, 제20사단은 주력을 경성에 두고 평양 이남의 각지에 부대를 배치하고 있으나, 중국과 국경을 접한 ‘조선비엄(庇掩)의 장벽’인 평안북도의 병력은 약했다. 따라서 여기에 1개 사단을 증가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이토는 주장하였다.²⁰⁾ 사이토는 1925년에도 사단 증설을 요구하여 보병 사단이 무리라면, 기병여단이라도 좋으니 신속하게 조선에 이전시킬 것을 절실히 바랐다(‘切望’).²¹⁾

조선 사단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사이토만이 아니다. 1924년 2월, 조선을 여행하였던 관동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중장도 조선에는 4개 사단을 두고 여기에 기병여단 등의 부대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병력 증강은 조선 통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의 작전상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시라카와는 설명하였다.²²⁾

사단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조선 민간에도 있었다. 물론 그 주체가 일본인 거류민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꼭 사단 증설 요구는 아니더라도 부대의 상주를 요망하는 움직임이 만세사건 이전에도 있었다. 상주 부대가 없는 전주에서는 1918년 1월 1개 여단을 설치·주둔해주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5만 엔을 거출해도 좋다는 진정이 있었다.²³⁾ 평양에서는 1924년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서선사단설치기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압록강 연안에서의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암약에 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단 설치를 요구하였다.²⁴⁾ 그 후 사단 증설 운동은 한 때 잠잠해졌으나, 1928년 2월 신문에 증사의 관측기사가 게재되자 다시 불붙어, 평양, 원산, 대전, 전주, 대구 등에서 사단 증설 혹은 병비 충실, 부대 상주를 진정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조선군 사령관과 조선 총독은 이러한 움직임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상의 경위에서 사단 증설 요구가 주로 치안유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0년대 전반에는 서간도에서 압록강에 침투해온 반일 무장세력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이러한 요구를 촉진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한, 그러한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토 총독이 시사한 바와 같이 사단 증가에 의해 강대한 군사력에 대한 위시 효과를 통해 조선인

19) <조선에 육군병력증가를 요구하는 건> 《사이토마코토문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장.

20) <조선에 육군상비병력의 증가를 요구하는 건> 《육군성밀대일기》 다이쇼12년 제1책 제3호.

21) 조선총독발 육군대신원 전문(1925년 7월 6일). 상동. 다이쇼14년 제4책.

22) <군사령관 조선 여행의 소견 송부의 건> 상동. 다이쇼13년 제4책 제3호.

23) <전주여단설치청원서> 《사이토마코토문서》

24) <청원서 조선사단증설에 관한 재청원> 상동.

25) <조선사단증치설에 대한 반항에 관한 건 보고> <조선증사운동에 관한 건 보고> <조선병비충실운동에 관한 건 보고> <조선병비충실촉진기성회조직에 관한 건 보고> 《육군성밀대일기》 쇼와3년 제5책 제13호, 제14호. 또한 《사이토마코토문서》에는 1931년에도 전주나 목포에서 병비 충실을 진정하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을 복종시키는 것도 기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20년대는 일본의 군축 시대였으며, 이 점에서 보면 조선에서의 사단 증가를 포함한 군비확장은 그것이 본국에서의 이전이라고 해도 재정적 혹은 정치적으로 무리였을 것이다.

단지, 몇 가지 점에서 병비 보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1925년, 제20사단에 비행 제6연대가 신설되었고, 한참 뒤 1935년에 제19사단에 비행 제9연대가 설치되었다. 이듬해에는 이 비행 2개 연대에 의해 제2비행단이 편성되었다. 두 개의 사단에는 고사포연대도 설치되었다. 1935년에는 제19사단의 국경지구의 수비대가 개편되어, 종래의 수비대는 조선군 내에 승인된 비공식적 편제였으나, 이때의 개편으로 육군 중앙에서도 정식으로 편제가 인정되었다.

이 개편에 대해 사단 참모장은 제19사단이 오랜 현안이었던 전력 증강을 실현하고, ‘명실 공히 국경 제일선의 사단다운 실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⁶⁾ 그는 사단이 대소(蘇)전에 대비한 태세를 정비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사실 제19사단과 제20사단은 조선 경비 때문에 1929년까지 육군 동원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²⁷⁾ 또한, 해마다 본국에서 실시되는 특별 대연습에 참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30년까지 사단대향연습조차 실행한 적이 없었다.²⁸⁾ 그 전 해인 1929년, 조선군은 조선방위상의 교훈을 얻기 위해 사단대향연습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참모본부에 알렸으나, 기각된 바 있었다.²⁹⁾ 그리고 이듬해에서야 마침내 경성과 수원 간에서 처음으로 사단대향연습이 실시되어³⁰⁾, 1935년에 호남평지에서 두 번째 동연습이 행해졌다. 이것도 국경방위, 대소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38년부터 조선군은 압록강, 두만강 연안 국경수비대의 대부분을 조선, 만주, 소련의 국경지구에 위치하는 훈춘(琿春)에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³¹⁾ 이미 만주사변 당시부터 조선군은 훈춘에 임시과건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국경수비대의 이주에 의한 주둔 병력의 규모 확대는 대소(蘇) 방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선에 상설된 2개 사단은 원래 대러방위를 근거로 증설된 것이었으나, 조선 국경내외의 불온한 정세 때문에 주로 치안유지에 힘을 쏟아왔다. 이것이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본래의 목적인 대소 국경방위로 전환하기 시작된 것이다.

중일전쟁 전 조선에 주둔하던 육군부대의 편제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³²⁾ 또한, 당시의 편제 1개 사단의 인원은 약 12000명이었으므로 재조선 육군부대의 병력은 약 3만 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6) <제19사단국경수비대신설개황보고> 《육군성밀대일기》 쇼와10년 제1권 제15호.

27) 방위연수고전사실, 1967년, 《전사총사 대본영육군부 (1)》 朝雲新聞社, 303쪽.

28) 병합 후, 약 20년간, 사단대향연습을 하지 않았던 것은 조선인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개, 후루야, 《조선군사령부》 186쪽.

29) <조선에 있어서의 사단대향연습실시희망에 관한 건> 《육군성밀대일기》 쇼와4년 제2책 제2호.

30) 1930년 사단대향연습에 관해서는 조선군사령부편, 1932년, 《조선군역사 제4권》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36-40쪽 참조.

31) <조선국경수비대의 이주에 따른 경찰력 증비의 건> 《육군성밀대일기》 쇼와13년 제3책 제7호,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編 해설, 1989년, 《조선군개요사 (15년전쟁극비자료집 제15집)》 후지출판, 22쪽.

32) 도야마 미사오·모리마츠 도시오(外山操·森松俊夫)編, 1993년, 《제국육군편제총람 제1권》 후요(芙蓉)서방, 352-353쪽, 400-404쪽.

Ⅲ. 군사행동

이 절에서는 1907년 여름부터 본격화한 항일무장투쟁, 이른바 의병전에 대한 진압이 시작된 시점부터 조선주둔 일본군의 군사행동을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의병투쟁에 대한 일본군의 진압 기록에 따르면, ‘반란분자’와의 무력충돌은 1907년 (8월 이후) 323회, 1908년 1451회, 1909년 898회, 1910년 147회, 1911년(6월까지) 33회이며, 1907년 9월부터 1909년 9월까지 매월 50회를 넘어 이 중 1907년 11월부터 1909년 6월까지 매월 100회 전후의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충돌 횟수가 최고조에 이른 것은 1908년 5월에서 7월에 걸친 시기였다.³³⁾

충돌은 한국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1907년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1908년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황해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서 자주 발생하였고, 1909년에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다. 일본군이 교전한 의병 규모의 평균은 1907년 140명 전후, 1908년 약 50명, 1909년 약 30명 정도로 소집단화 해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정보 부족으로 고민했으며 편성 규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민첩성이 결여되어 있어 의병을 포획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³⁴⁾ ‘토벌’ 행동은 거칠었는데 촌락이 의병을 지지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범인을 일으킨 마을의 책임으로 하여 징벌을 가하거나 또는,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등의 조치를 실행하였’ 다.³⁵⁾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제13사단은 전국을 4개의 수비관구로 나누어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남부(서울주둔, 이하 팔호 안은 주둔지), 서부(평양), 중부(북청, 함흥), 동부(경성(鏡城), 회령)의 4관구로서 명백히 북방에 중점을 둔 배치였다. 한국 각지에서 전개된 의병투쟁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 1907년 7월 하순, 한국군대 해산에 따른 불온한 정세에 대비하여 본국에서 보병 제12여단이 파견되고, 나아가 무력봉기가 시작된 후의 9월 하순에는 4개 중대의 임시파견기병대가 증파되었다. 제13사단 자체도 연말에 부대 배치를 변경하여 남북 2개의 수비관구로 정리하고 각각의 관구를 세분화하여 부대를 배치하였다. 종래는 중소대 이상의 단위로 주둔하였는데 분대 수준으로 주둔하는 경우도 나타났다.³⁶⁾

다음해 1908년 3월,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해 한국정부 외교 고문을 맡고 있던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에게 암살당하자 이에 자극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내의 무력 봉기가 활발해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2개 연대(보병 제23연대, 동 제27연대)가 파견되었다. 합계 약 3300명의 병력 증파였다.

한편, 분산배치로 전환된 주둔사단이나 증파부대로 대처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헌병대의 증강에 의해 보완되었다.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대는 러일전쟁 후 한 때, 제14헌병대로 개칭되어 군사경찰임무에 전념하였으나, 1907년 10월, 새롭게 한국주차헌병대로 재편되어 증강되었다. 대

33) 조선주차군사령부편, 1913년, 《조선폭도토벌사》 조선총독부관방총무국인쇄소. 부표 제3 <자메이지 40년에서 44년 폭도충돌회수 및 충돌폭도수구분표>

34) 야마무라 겐(山村健), 2001년, 《의병전 1907-1909: 병합직전기 한국 항일의병투쟁 연구》 방위연구소전사부연구자료 01R0-3H, 20-22쪽, 37쪽.

35) 전개, 《조선폭도토벌사》 13쪽.

36) 전개, 《의병전 1907-1909》 66쪽.

장(隊長)에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혁명과 원조 등 첩보 임무로 활약하던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소장이 취임하였다. 아카시를 기용한 것은 무장투쟁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간파하고 있는 그의 경험과 수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08년 6월에는 앞서 말한 헌병보조원의 모집이 시작되었다. 4000명을 넘는 보조원의 활동에 의해 정보부족은 서서히 해소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헌병대의 의병과의 충돌 회수는 1908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동년 10월에는 제13사단을 중심으로 한 수비대의 충돌 횟수를 상회하게 되었다. 소집단화한 의병운동에 대해서는 헌병이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하여 의병진압의 주체는 수비대에서 헌병대로 이행한 것이었다. 늦어진 제13사단의 본국 귀환이 결국 같은 해 10월부터 11월에 실시된 것도 ‘토벌’ 주체가 헌병대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13사단에 대신하여 제6사단이 주둔하고 다음해 1909년 제12여단, 임시과건기병대, 제27연대(제23연대는 제6사단 소속이므로 그대로 주둔)이 임시한국과건대와 교대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일본군의 조사에 따르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측(수비대, 헌병, 경찰을 포함) 사망자는 136명, 부상자는 277명이었고, 이에 대해 의병측의 사망자는 17799명, 부상자는 3706명, 포로는 2139명으로 기록되고 있다.³⁷⁾ 일본측은 고충을 겪은 것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한편, 의병측 피해의 막대함은 주로 무기의 빈약함이 이유였다.³⁸⁾

이상과 같이 의병투쟁의 경험도 있어 1910년 한일병합 시에는 서울 부근에 병력을 집중하여 수도에서의 폭동 발생에 대비하였다. 보병 1개 연대밖에 수용할 수 없는 용산의 병사에 보병 15개 중대, 공병 1개 중대가 모였다. 공병 중대가 배치된 것은 ‘과거 폭도가 폭동을 일으킬 때에 한국 재래의 성벽 등을 이용하여 토벌대에 저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폭파하기위 해서’였다.³⁹⁾

단지 병합 당시에는 경계한 정도의 무력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무단정치’로 불리는 강압적 통치가 행해져, 헌병을 주체로 치안 유지가 도모되었다. 그 결과, 평온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대규모 폭동과 무력 저항이 빈발하는 사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즈음 2개 사단 증설이 대리전 대비의 충실화를 첫 번째 근거로 하였던 것은 이러한 조선의 치안상황이 그 배경에 있었다. 그리고 이 2개 사단 편성 도중에 1919년 3월, 3·1독립운동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때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원사) 조선총독은 ‘조선에 대한 장래의 통치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 사용을 경성 주변의 소요 구역에만 두려하였으나, 독립운동이 조선 각지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조선군에게 지시하였다.⁴⁰⁾ 지시를 받은 우츠노미야 타로(중장) 조선군사령관은 일시적인 분산배치를 결정하여 성진, 북청, 원산, 춘천, 공주, 안동, 충주, 이리, 송등리, 진주 등에 각각 1개 중대를 분산 주둔시켰다. 이 때 우츠노미야는 폭동에 참가하는 군중은 일시적인 오관 혹은 선동과 협박에 의해 부화전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요를 진압하는 데에 있어서 가급적 온화한 수단에 의해 무기사용과 같은 것은 절대로 이를 제한하고 진정으로 피치 못할 경우에 제한하여야 한다’고 훈시

37) 전계, 《조선폭도토벌사》 부표 제2 <자메이지39년에서 44년 폭도토벌 피아 부상 류별표>.

38) 전계, 《의병진 1907-1909》, 35쪽.

39) <용산주차공병중대 이전의 건> 《육군성밀대일기》 다이쇼원년 제2책 제17호.

40) <조선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의 소요사건만연에 대한 병력배치에 관한 군사령관예의 지시의 건> 金正明 편, 1967년, 《조선독립운동 I》 하라쇼보. 347쪽.

하였다.⁴¹⁾

그러나, 독립운동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고 진압하는 쪽도 저항하는 쪽도 종종 격렬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당초 무기사용의 제한을 훈시하였던 우츠노미야 군사령관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거의 180도 전환하여 ‘최근 군대가 행동에 지나치게 신중하면 그들 폭민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어’, 명령을 듣지 않고 저항할 때에는 ‘군대는 단연 소용의 탄압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을 숨죽여 복종케’하여야 한다고 지시하기에 이른다.⁴²⁾ 독립운동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은 본국에서 보병 6개 대대, 헌병 및 보조헌병 약 400명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헌병대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 해 3월과 4월, 독립운동의 ‘소요’가 발생한 장소는 618곳, 회수는 847회, 관헌측 사망자는 8명(헌병 6명, 그 밖의 군인 0명, 경찰관 2명), 부상자는 158명(헌병 91명, 그 밖의 군인 4명, 경찰관 61명, 기타 2명)이었고, ‘폭민’ 측 사망자는 553명, 부상자는 1409명, ‘보통민’의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8명이었다고 한다.⁴³⁾ 기록상의 조선인 희생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 숫자를 통해 진압에 임했던 주체가 헌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 독립운동은 국외의 조선독립운동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쳐 국외 운동을 활성화하였다. 그 중심이 된 것은 만주 길림성 서부로 주민의 80%가 조선인인 간도(間島)지구였다.⁴⁴⁾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의해 연해주의 조선인 반일 무장세력도 간도로 집결하여 간도는 항일독립운동의 일대 거점이 되었다. 이 무장세력은 두만강 혹은 압록강을 넘어 조선국경 내에 침투하여 국경수비대와 경찰서, 친일적 지방 관리를 기습하였다. 이른바 ‘불령선인’에 의한 테러 활동인 것이다. 조선군 2개 사단의 고정 인원화가 실시되어, 그 증원분이 주로 국경수비대에 할당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0년 9월과 10월, 간도지구의 훈춘을 마적이 습격하였는데, 두 번째 습격에서 일본인 거류민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3월, 연해주 니콜라에푸스크에서 일어난 일본인 거류민 대량살해사건(니항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시기였다. 일본 정부는 거류민 보호와 ‘불령선인의 화근을 일소하기 위해’ 간도 출병을 결정하였다.⁴⁵⁾

파견을 명령받은 것은 제19사단이었다. 시베리아 출병에서 소환 중이던 제14사단의 1개 여단도 제19사단의 지휘 하에 들어갔는데, 그 임무는 ‘불령선인에 대한 시위(示威)행동’이었고⁴⁶⁾, 전투에 종사한 것은 오로지 제19사단이었다.

제19사단은 마적뿐 아니라, 오히려 마적보다도 ‘불령선인’ 토벌에 주력하였다. 토벌은 11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종료하였으나, 조선인 부락을 습격하는 등 ‘화근을 일소’하기 위해 철저히, 지나칠 만큼 혹독하게 이루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듬해 2월에 동 사단이 정리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토벌에 의한 사망자는 조선인이 522명, 중국인이 9명이었다.⁴⁷⁾ 아마도 이 숫자는 과

41) <독립운동방지를 위한 군대분산배치의 건> 상동. 356쪽.

42) 요시이 겐이치(芳井研一), 1976년 6월, <식민지치안유지체제와 군부-조선군의 경우> 《계간현대사》 7호, 169쪽에서 재인용.

43) <육군성발표 손해내역수정정에 관한 건> 金正明편, 1967년, 《조선독립운동 I 분책》 하라쇼보, 253쪽.

44) 이하, 간도 출병에 관해서는 李盛煥. 1991년. 《근대동아시아의 정치역학-간도를 둘러싼 일중조관계의 사적진개》 錦正社. 제4장, 사사키 하루다카(佐々木春隆). <‘훈춘사건’고> 《방위대학기요인문사회과학편》 제39편(1979년9월), 제40편(1980년3월), 제41편(1980년9월)을 참조.

45) <다이쇼9년10월7일 각의결정> 姜德相편. 1972년. 《현대사자료(28) 조선(4)》 미스즈쇼보(書房). 184쪽.

46) <조참밀 제1008호> <작전제57호> 상동, 189-190쪽.

소하게 기록된 것일 것이다. 토벌이 실질적으로 종료한 후, 제19사단은 축차 철퇴를 시작하여 1921년 5월까지 철퇴를 완료하였다.

상술한 간도 출병에 의해, 간도지구의 조선독립운동이 진정하자 이 운동의 중심은 봉천성 서부의 서간도(주민의 15%가 조선인)로 옮겨졌다. 서간도에서 압록강을 건너 침투해오는 ‘부령선인(不逞鮮人)’이 증가한 것이다. 1924년 조선을 시찰 여행한 시라카와 관동군 사령관은 이 점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또한 전술한 것처럼, 같은 해에 평양의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사단증설에 관한 진정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위협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즈음 서간도를 근거지로 하는 독립운동은 그 규모나 기세가 이전의 간도에서의 운동 정도는 아니었다. 조선군은 국경지대에서의 ‘부령선인’의 움직임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위기감은 약간 완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조선인 일반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군의 어느 막료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었다. ‘선인의 민족적 의식은 해가 거듭할수록 왕성해져, 민족 해방, 조선독립의 염원은 문화의 진보와 함께 일익 열렬해지고 있다. 친일이라고 불리든 배일이라고 불리든 오십보백보로 각인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곧 조선민족의 독립이다. 조선 내외를 불문하고 사상은 공통되어 있어 기회가 있다면 제국의 굴레를 벗어날 것을 애대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⁴⁹⁾

이러한 상황에서 중시된 것이 군대의 존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압적 효과였다. 전술한 것처럼, 1920년대 후반의 사단 증설 요구에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1929년 가을에 개최된 조선박람회 에 육군관과 해군관을 설치해 일본군의 위용을 전시한 것에도 그러한 목적이 깔려있었다고 보인다.⁵⁰⁾

한편,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중국 정세의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군이 사용되는 예가 눈에 띄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일본 제국의 확장을 위해 조선군이 활용되는 경우였다. 1925년 12월, 화북의 봉천군벌 장령 곽송령이 모반을 꾀해 만주에 공격해 들어와 장작립의 명맥이 다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 때 내지로부터 혼성 1개 여단이 파견되었고 조선군에서도 보병 2개 대대, 야포병 2개 중대가 보내져 봉천을 포진하였다. 단, 이 때 일본군은 전투에 종사하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1928년 5월, 장개석에 의한 북벌재개에 대해 일본이 제2차 산둥출병을 실시하여 중일 양군이 제남에서 충돌했을 때, 정부는 만주에서 혼성 1개 여단을 산둥에 증파함과 동시에 그 보충으로서 조선군에서 제40여단을 기간으로 한 혼성 여단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혼성 제40여단은 봉천 등에 주둔한 뒤 9월에 조선으로 돌아갔다. 이 때 조선군의 제6비행연대에도 파견 명령이 내려져, 임시 편성된 비행 1개 중대가 임시파견비행대로서 제남에 파견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정찰 임무를 한 뒤 11월에 평양으로 귀환하였다.⁵¹⁾ 조선군에서는 몇 가지 비상사태를 상정하여 사단 수준, 혼성여단 수준, 연대이하 수준이라는 세 종류의 출병 계획을 작성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⁵²⁾ 이는 만주 등으로의 파견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7) 제19사단사령부 <간도사건선지인사상자조> 상동, 520-544쪽.

48) 전계, <군사령관 조선 여행의 소견 송부의 건>

49) 조선군사령부 <선인문제와 그 대책> 《육군성밀대일기》 쇼와2년 제4책 제6호.

50) <조선박람회에 대한 감상등 내사의 건 보고> 상동, 쇼와5년 제2책 제2호.

51) 참모본부편, 1971년, 《쇼와3년지나사변출병사》 복각판, 간난도(巖南堂)서점, 626-699쪽.

52) 테시마 후사타로(豊嶋房太郎), 1956년 12월, <조선군월경진격!> 《별책지성 숨겨진 쇼와사》 53쪽.

더욱이 이러한 출병 계획에는 육군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조선군 자체의 의도도 담겨있었다. 이 즈음 만주에서의 이른바 배일행위의 고양에 따라 훗날 만보산사건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당시의 일본신민인 조서인도 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해, 조선군으로서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출병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1927년 말, 조선군사령관 가나야 환조(金谷範三) 중장은 ‘지나(支那)관민의 재만선인(在滿鮮人) 압박에 관해서는 제국은 정정당당히 강경하게 항의하고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력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상부에 알리고,⁵³⁾ 이에 덧붙여 ‘다년간 잘못된 문화정치에 의해 나쁜 사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선인에 대해 이 참에 단호히 권위 있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형무형상 조선군의 권위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논하였다.⁵⁴⁾ 출병은 조선군의 ‘권위’를 시위하고 그 위압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 당시, 조선군이 보여준 출병에 대한 적극성에는 이상과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모략에 의해 사변을 일으킨 관동군 막료와 조선군 막료 간에 사건 발생에 따른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군사령관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중장의 독단에 의한 군의 월경은 이 때문에 강행되었다. 처음에 파견된 것은 혼성 제39여단과 독립비행 2개 중대였다. 그 뒤 독립비행 1개 중대와 제20사단사령부, 그리고 제19사단에서 혼성 제38여단도 파견되었다. 파견부대는 관동군을 원호하기 위한 만주 남부의 경비와 ‘비적’ 소탕에 종사하였고 치지하루 부근의 전투에서 참가하였다. 폭동에 뒤섞여 폐쇄 부의가 천진에서 끌려나온 뒤 일부 부대가 천진에 보내졌다. 그리고 그 후, 금주 공략에 참가하여 1932년 5월, 조선에 귀환하였다. 제20사단의 전사자 및 부상자는 57명으로 전해진다.⁵⁵⁾ 혼성 제38여단은 그 뒤 북만주에서 ‘비적토벌’에 종사하고 같은 해 10월 귀환하였다.

사실,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조선군이 바라던 것은 간도로의 출병이었다. 모략에 있어 관동군 막료와 연계하고 있었던 조선군 막료에 의하면 ‘선내선인의 불평에 대비하는 안전 책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간도의 조선 편입’을 만주사변과 병행하여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고 한다.⁵⁶⁾ 하야시 군사령관은 ‘간도는 민족의 목소리로서 조선에 병합을 바라고 있어 완전히 조선의 한 지방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⁵⁷⁾

그러나, 사변 발발 당시, 간도 출병은 정부와 군 중앙에 의해 억제되었다. 모략으로 간도에서 폭동을 일으켜 출병을 유도하려는 구상도 있었으나, 실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야시 군사령관은 점차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혈기 넘치는 제19사단의 움직임에 제어를 걸었다. 1932년 4월, 거류민에 대한 위협이 임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드디어 간도 출병이 실행되었으나, 이것은 중국군에 의한 공격에서 조선인, 일본인을 지키기 위한 출병으로서 간도를 조선에 편입하거나 병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간도에는 제19사단에서 보병 75연대본부와 보병 2개 대대, 경원(慶源) 수비대를 기간으로 하는 간도임시파견대가 파견되어 주로 거류민 보호, ‘비적토벌’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촌락을 공격

53) <재만선인압박에 관한 의견구신> 《육군성밀대일기》 쇼와3년 제4책 제1호.

54) <조선군사령관의견의 건 상신> 상동, 쇼와3년 제4책 제3호.

55) 조선군사령부, 1936년, 《조선군역사 제5권》 방위연구소도서관소장, 198쪽.

56) 간다 마타타네(神田正種), <압록강> 小林龍川·島田俊彦 편, 1964년, 《현대사자료(7) 만주사변》 미스즈쇼보, 461쪽.

57)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만주사변일지》 미스즈쇼보, 1996년, 120쪽.

하거나 민가를 폭파하는 등 ‘선인에 대한 태도가 신중하지 못한 자’⁵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파견대는 약 1년 후인 1933년 6월에 원대 복귀하였다.

1932년 간도 출병은 1920년의 간도출병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불령선인’ 토벌을 위한 것이었으나, 전자는 거류민 즉, 거주 조선인과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지, 1932년에도 일부에는 간도를 병합 혹은 편입함으로써 직접적인 통솔 하에 두어 조선독립운동을 근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병합이나 편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제국 확대라는 동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간도 출병에는 대소 작전상의 의도도 관계하고 있었다. 만주사변이 시작한 2개월 후인 1931년 11월, 육군중앙은 대소작전 계획의 일환으로 제9사단에 간도·훈춘지구를 영유시켜 대(對)우스리 작전을 용이하게 하려는 구상을 보이고 있었다.⁵⁹⁾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간도출병의 과정에서 보병 2개 중대를 기간으로 편성된 훈춘파견대이다. 이로서 훈춘지구의 방위는 조선군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초 ‘비적토벌’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동파견대는 결국 대소작전상의 역할을 중시해가게 된다. 그 배경에는 만주사변에 의해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통절히 느낀 소련이 극동지역에서의 군비 강화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전력 면에서 일본의 대소 열세는 점점 커져갔다는 사정이 있었다. 만주사변 후의 대소 작전 계획은 동쪽 정면에서 연해주의 소련군을 격파한 뒤 서쪽 정면에 대해 병력을 집중하여 주 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연해주에서의 소련의 군비 강화가 눈에 띄게 현저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훈춘은 대소작전상의 중요거점이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38년에 조선군이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 수비대의 대부분을 훈춘에 이주시키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 같은 해 7월, 두만강 하류 산악 지역에서 국경선을 둘러싸고 소일 양군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장고봉(張鼓峰)사건이다. 이 때 중일전쟁에 여념이 없던 육군중앙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소련이 중일전쟁에 군사적 간섭을 할 의향이 없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 소련군에 일격을 가하려 하였다. 이른바 위력 정착이다. 이 때문에 대소 공격에 사용된 병력은 제19사단만으로 한정되어 비행기나 전차는 사용하지 않고, 화포도 사단이 보유한 것만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우회 포위나 추격과 같은 전술상의 필요성이 있어도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제한이 있었다. 그 결과, 제19사단은 근대적인 장비를 갖고 있는 소련군과의 격전에서 대대한 피해를 입었다. 투입된 병력 약 7,000명, 사상자 약 1,500명(이 중 전사자 약 500명), 사상율 22.3%라는 숫자가 이 전투의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⁶⁰⁾

장고봉사건이 일어난 뒤, 조선군은 훈춘에서의 거류민 보호의 임무가 해제되고, 이번에는 관동군이 두만강 하류지역의 대소방위를 담당, 조선영내의 국경지대에 부대를 두는 것이 허용되게 되었다. 만주사변 후, 마침내 치안유지의 임무가 경감된 조선군은 본래의 대소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충분히 공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20사단은 곧바로 화북에 파견되어 2년 반 동안 중국 전장에서 전투에 임하고 1940년 초두에 복원하였다. 그 뒤 대동아전쟁 말기, 1944년 3월에

58) 상동, 152쪽.

59) <시국에 따른 대‘소’지 양국 작전계획대강> 전계, 《전사총서 대본영육군부 (1)》 322쪽.

60) 방위연수소전사실, 1969년, 《전사총서 관동군 (1)》 朝雲新聞社, 411-412쪽.

다시 동원되어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에서 싸우고 일부는 레이테섬에서 미군과 전투하였다. 제19사단은 같은 해 11월에 동원되어 필리핀으로 보내져 루손섬에서 싸웠다.

IV. 조선인 지원병제와 징병제

일본 식민지군에는 구미의 식민지군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일본군이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식민지인을 장병으로 채용하지 않은 점이다.⁶¹⁾ 이것은 다른 아시아 식민지, 예를 들어 영국의 인도병(영인군), 프랑스의 베트남병(불인군) 등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식민지 통치의 방법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조선군이 처음부터 완전히 조선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07년에 한국군(약 7,700명)이 해산되었을 때, 장교의 대다수가 면관되었으나 약 100명이 남아 이 중 반수 가까이가 1909년 한국정부의 군부 폐지와 동시에 예비역 또는 휴직 상태가 되었다. 남은 수십명의 장교는 병합 후, 일본군의 장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1920년에 정규 일본군 장교가 되어 일본군과 같은 계급명이 부여되었다.⁶²⁾ 조선군에 소속된 조선인 장교는 1925년 현재, 겨우 30명 정도(후술하는 조선보병대의 장교 포함)였다.

이 같은 조선인 장교 일부는 조선(주차)군사령부 혹은 헌병대 사령부나 조선 왕공부무관에 임명되었다. 일본육군사관학교(육사)출신으로 한국군 장교가 되어, 병합 뒤 이강공부무관, 이왕부무관을 지낸 어담(魚潭, 후에 중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또한, 이왕가와 왕궁의 경호를 위해 병합 뒤에 조선인만에 의해 조선보병대와 조선기병대가 편성되었는데, 그 지휘관도 구 한국군장교였다. 1913년, 보병대는 절반으로 줄었고 기병대는 폐지되었다. 남은 조선보병대는 본부와 2개 중대, 총 인원 300명 정도(이 중 장교 약 40명)뿐이었다.⁶³⁾ 그 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인원이 삭감되어 1922년에는 합계 약 200명이 되었고,⁶⁴⁾ 1930년 폐지되었다. 제대자 대부분은 경찰관, 관리, 학교직원 등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⁵⁾

또한 전술한 것처럼, 헌병대에서는 병합 전부터 보조원으로 한국인이 고용되고 있었다. 당초 약 4,000명을 채용했을 때, 그 20%가 해산한 한국군의 병사였다. 보조원 제도에는 구한국군 병사에 대한 대책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⁶⁶⁾ 헌병보조원은 1919년에 헌병보로 개칭되어 육군의 평시편제 정원 안에 추가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 헌병보는 겨우 50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원자는 모집자의 수십 배에 달하였고, 그 3분의 1은 중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⁶⁷⁾

한편, 구한국군에 속하면서 일본군의 장교로 옮겨간 다른 경우도 있다. 홍사익(洪思翊, 후에

61) 마크 피티에 의하면 일본은 현지주민의 부대를 육성하지 않은 유일한 식민세력이었다고 한다. 마크 피티(淺野豊美 譯), 1996년, 《식민지(20세기의 일본 4)》 요미우리신문사, 170-171쪽.

62) <조선인장교에 관한 서류> 《사이토마코토 문서》

63) <조선보병대편제개정동기병대폐지요령제정시행의 건> 《육군성밀대일기》 다이쇼원년 제3책 제5호.

64) <조선보병대편제개정의 건> 상동, 쇼와4년 제1책 제2호.

65) <조선보병대제대자의 지방에서의 상황에 관한 건> 상동, 쇼와5년 제2책 제21호.

66) 전계, 야마무라, 《의병전 1907-1909》 70쪽.

67)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건> 《육군성밀대일기》 쇼와12년 제2책 제4호.

중장)은 한국무관학교를 중퇴하여, 병합 전에 일본 중앙유년학교예과에 편입하였고, 병합 후에는 중앙유년학교를 거쳐 육사에 입학하였다. 육사 졸업 후, 육군대학교도 졸업해 일본육군의 엘리트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조선군에 배속되는 일은 없었다.

그 외에, 병합 후 조선인 청년이 일본육군 장교가 되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법규상 문제는 없었지만 육군 장교 육성학교(유년학교, 사관학교예과)에 조선인과 대만인의 입학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24년 일이었다, 응모자의 접수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25년부터였다. 그리고 그 후의 육사 예과를 들여다보면, 1928년까지 매해 조선인응모자가 각각 1명, 11명, 11명, 12명이었는데, 일반 채용률(채용자수를 응모자수로 나눈 비율. 채용자 1인당 응모자수는 1926년 이후 각각 29명, 34명, 22명)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명도 채용되지 못하였다.⁶⁸⁾

육군 당국자에 의하면, 장교 생도(사관후보생) 채용에 관해 본래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차별 폐지가 1924년까지 결정되지 못한 것은 부내에 ‘이론자(異論者)’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⁹⁾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20년대 중반이 되어서 이러한 ‘이론’이 늘리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 조선인의 징병제나 지원병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일찍이 1918년, 먼저 소개한 전주의 유지가 1개 여단의 상주를 진정했을 때, 이 청원은 당국이 조선인 징병을 결정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둔 것이었다. 이것은 지방에서의 징병으로 편성한 여단을 주둔해주길 바란다는 요망이었던 것이다.⁷⁰⁾ 또한, 이듬해 조선군은 3·1 독립운동에 관한 반성 인식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독립 수비대의 편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그 중에 조선인 부대를 만들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장래의 징병령 시행에 대한 준비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⁷¹⁾

1926년에는 육군에서 병역법의 심의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식민지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화되었다. 이 때 조선군은 병역법이 채택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선보병대의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싶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육군중앙에 알렸다. 조선인을 병역에 복역케 하여 ‘규율 절제 있는 국민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통치상의 견지에서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곧 바로 병역법 전부를 조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지원자 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전제로서 조선인이 군인으로서 어떠한 소질을 갖고 있는지 등 병역법 적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선보병대에 일본군과 동등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여 그 판단의 재료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다.⁷²⁾

그러나 이 때 육군중앙은 병역법을 식민지에 적용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거부하였다. 육군성 징모과는 법제나 민심, 풍속관습 등의 면에서 내지와 식민지 간의 큰 차이를 고려하면 병역 의무를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감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식민지인에 대한 참정권 혹은 자치권 부여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었

68) <조선인학생육군군 의탁학생지망의 건> 상동, 쇼와4년 제2책 제14호. 또한 육사는 1937년도에 조선인 2명, 1938년도에 1명을 채용하였다. <선내사상상황에 관한 건> 상동, 쇼와14년 제4책 제18호.

69) 전계, <조선인학생육군군 의탁학생지원의 건>.

70) 전계, <전주여단설치청원서>.

71)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조사보고의 건> 전계, 《조선독립운동 I 분책》 27쪽.

72) <조선보병대훈련향상에 관한 내의의 건> 《육군성밀대일기》 쇼와2년 제2책 제11호.

던 점이다. ‘병역의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를 부과하는 과정으로서 조선대만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여 그 민의를 대표하는 자를 의정 단상에 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그 후에 병역의무를 과한다는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 외에도 국방상 고려해야 할 문제로서 식민지인과 내지인 사이에는 국가·천황에 대한 충성심에 차이가 있다는 것, 전투조직의 구성분자로서 식민지인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신영토의 알자스로레누에서 징모한 부대의 전선에서 붕괴하였고, 오스트리아군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매우 열악하였다는 점, 구미제국에서조차 아시아영토의 현지인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을 들었다. 그리고 식민지인에게 병역 의무를 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열렬충성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현재에 있어 지원 병원의 종류에 응해 일부 그 길을 닦아 장래에 군의 성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점차적으로 적당히 그 뜻을 키우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한다’라고 징모과는 논하였다. 육군대신(우가키 카즈시게)도 병역법안 심의를 위해 설치된 심의회 석상에서 상기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⁷³⁾

그 후, 조선군에는 1932년 이래 조선인의 병역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것은 1937년에 들어서였다. 같은 해 6월, 육군중앙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조선군은 장래 병역법의 완전 실시(징병제적용)를 수십 년 후로 상정하고 그 때까지 과도적인 조치로서 지원병 제도의 채용을 제안하였다.⁷⁴⁾ 이 제안에서는 지원병제도에 기대되는 효과로서 조선인에게는 ‘내선일여무차별적대우’를 보여주고, 국토방위 책무의 분담에 의해 ‘조국애’를 고양시켜 제대 후에 향당의 증견적 존재가 되는 병사를 통해 조선인 청장년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선인 지원병을 일본인 병사와 함께 전투부대에 혼입시킬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의 조선인 경찰관이나 헌병보조원(헌병보)가 ‘비적도벌’에서 보여준 실적에 비추어 전투력이 저하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 부대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감정의 소원에 대해서도 재조선부대의 일본인 장병은 일상적으로 조선인과 접하여 그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인도 최근에는 ‘헌신적 봉공의 지성’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만 잘한다면 군은 ‘내선융화’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반대로 조선인 지원병만의 부대를 편성하는 것은 ‘내선일여’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원병제도 창설의 효과 대부분을 잃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징병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지원병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서 조선군은 조선총독부에 교육 쇄신을 제안하였다. 즉, 소학교를 정비하여 조선인 아동의 완전 취학을 지향할 것, 교육 내용으로서 ‘국체의 투철한 이해와 왕성한 국가적 의식의 함양’을 도모할 것, 지원병 훈련소를 설치하여 현역 장교, 하사관에 의한 약 6개월간의 예비교육을 실시할 것이 요청되었다.

위와 같은 제안이 정리될 때까지는 몇 가지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년에 총독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예비역육군대장)는 지원병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⁷⁵⁾ 이에 대해 조선군 사령관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중장)는 소극적이었다. 고이소에 의하면 그는 군은 인적 자원에 곤궁하지 않으며 조선인의 교육 정도나 일본인과

73) 상동.

74) 조선군참모장, <조선인지원병문제에 관한 건 회답>, 전게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건> 수록.

75) 미타라이 타츠오(御手洗辰雄) 편, 1957년 《미나미 지로》 미나미지로전기간행회, 467쪽.

의 차별 등의 면에서 만약 지원병제도가 있다고 해도 아직 그 전제 조건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참정권 부여 쪽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⁷⁶⁾ 한편, 조선군 사령부의 당초의 의견에는 지원병제도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일체화를 지향하는 ‘반도 민심의 선도’와 일본의 대외작전 실시상의 대병참기지인 ‘조선의 방위’에 있고, 단순한 인적 자원의 보충이라든가 조선인의 ‘평등권 획득 열기’에 영합하려는 ‘천박한 기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⁷⁷⁾

결국, 1937년 12월, 중일전쟁이 시작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 각의는 이하의 4항목을 결정함으로써 조선인 지원병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 ① 조선의 학교교육을 쇠신…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과 자질을 강화 향상한다
- ② 조선인지원병제도를 채용하여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한다
(단, 이를 위해 조선인의 참정권을 확장할 의지는 있지 않다)
- ③ 신사숭경의 염을 함양하여 우리나라 국체관념을 명확히 한다…국어(國語)를 보급하여 사상의 선도를 도모…
- ④ 반도계주의 내지인의 증가정착을 피하고…내선의 융합을 강화한다…⁷⁸⁾

위의 각의 결정을 살펴보면 지원병제도를 포함한 병역문제가 단순한 군사적 시책만이 아니라, 조선통치 전체에 관계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조선인의 참정권 부여를 동반하지 않으며, ‘조선의 일본화’, ‘내선융화’를 진척시켜 교육의 쇠신, 일본어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과 하나의 세트(세트)로 여겨졌던 것이다.

조선의 지원병제도는 1938년 2월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에 기초하여 이 해부터 실시되었다.⁷⁹⁾ 지원병 자격은 연령 17세 이상, 6년제 소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사상이 건고’하고 강건하여야 하며, 군대에 들어와도 일가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자였다. 또한, 채용된 후에는 조선총독부 육군지원자 훈련소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거친 후(1940년도부터 4개월로 단축) 부대에 입영하였다.

모집수와 응모자수는 1938년도 400명에 약 2,900명, 1939년도 600명에 약 12,300명, 1940년도 3,000명에 약 84,400명, 1941년도 3,000명에 약 144,700명, 1942년도 4,500명에 약 254,300명, 1943년도 5,330명에 대해 약 303,400명이었다.⁸⁰⁾ 배율은 당초의 약 7.5배에서 1943년도의 5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고이소 조선군사령관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는 적었다고 하며, 총독부의 지시 아래 각도가 경합하여 경찰관을 사용해 권유한 결과라고 한다.⁸¹⁾ 서류에 영합한 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²⁾ 그러나, 위에서부터의 강한 권유만으로는 이 정도로 응모자가 증대한 것을 설명할

76)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1965년, 《小磯國昭自伝 葛山鴻爪》 마루노우치출판(丸の内出版), 630쪽.

77) 조선군사령부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 전계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건》 수록.

78) <조선인지원병문제에 관한 건> 《육군성밀대일기》 쇼와13년 제2책 제5호.

79) 지원병제도의 실시에 관해서는 미야다 세츠코, “조선에 있어서의 지원병제도의 전개와 그 의의” 하타 다카시(旗田巍)선생 고회기념회편, 1979년, 《조선역사논집 하권》 류케이쇼샤(龍溪書舍)를 참조.

80) 전계, 후루야, 《조선군사령부》 205-206쪽, “‘황군’병사가된 조선인” 《계간현대사》 4호 (1974년 8월) 139쪽.

81) 전계 《小磯國昭自伝 葛山鴻爪》 641쪽.

수는 없다. 지원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의한 영향도 컸을 것이며, 헌병보의 응모 비율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청소년이 군인이라는 직업에 매력 같은 것을 느꼈던 것도 경시할 수 없다.

1939년, 2회째 모집을 종료한 시점에서의 점검에서, ‘일반 성적은 대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류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정 출신자’가 많고 학력도 소학교 졸업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제대 후에 지원병이 향당의 ‘중견’이 되어 ‘내선융화’를 위해 공헌하는 것에 대해 기대가 컸던 조선군에 있어서, 이 점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⁸³⁾ 한편, 조선인 측에서는 직업으로서 군인에 대한 매력은 ‘중류이하’의 청년 사이에서 특히 강했다.

또한, 훈련소에서의 훈련을 거친 뒤, 지원병이 입영하는 것은 1940년도까지는 조선군의 부대였으나, 다음해 1941년부터는 조선군 이외의 부대에도 배속하게 되었다. 병종은 당초, 보병, 고사포병, 치중병·특무병만이었으나, 1941년부터 야포병, 산포병이 추가되어 1942년에는 기병, 야전중포병, 공병, 1943년에는 방공병도 포함되어 거의 전병종이 개방되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적용이 확정된 1943년에는 고등전문학교, 대학재학중의 조선인 징병적령자에 대해 지원하면 훈련소과정을 면제해주고 입영시켜주는 간부후보생으로서의 길을 열 수 있는 임시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같은 해는 약 3,000명이 채용되었다.⁸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39년도까지 지원병 모집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수의 응모자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수를 낮게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원래 조선인의 군사 능력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아가 고이소가 회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인적자원의 부족을 조선인 지원병에 의해 보충하려하는 발상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았기 때문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지원병제도 도입의 원래의 주된 목적은 ‘내선일여’의 실제화나 제대자를 조선사회의 ‘중견’으로서 육성하는 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일본 육군은 인적자원의 부족을 통감하고 그 보완책의 하나로 조선인 지원병에 착목하게 된다. 1940년도부터 모집자 수가 600명에서 3,000명으로 5배 증가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위로 지원병제도의 목적이 전환되어 간다.

이와 병행하여 현실성을 띠어 가는 것이 조선에 대한 징병제 도입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래 지원병 제도는 장래의 징병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실시된 것이었는데, 그 때는 징병제가 수십 년 후에 실현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런데,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그러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 지원병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는 많은 응모자 수는 징병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1938년 말, 조선군은 2,300만인에 이르는 조선인의 인적자원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일전쟁을 위해 동원된 일본군의 구성과 장정 수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은 이미 조선인 병역문제의 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며, 한 번에 병역법을 제정하여 군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특히 중시된 것은 일본어 이해 능력이었다. 남자

82) “선내사상상황에 관한 건” 《육군성밀대일기》 쇼와14년 제4책 제39호.

83) “선내병사부장회의서류제출의 건” 상동, 쇼와14년 제2책 제21호. 1940년도 응모자에 관해서는 ‘하류의 생계를 하는 자’가 50%, 소학교졸업 혹은 중퇴자가 93%였고, ‘제도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자’는 겨우 19%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선내사상상황에 관한 건” 상동, 쇼와15년 제6책 제59호.

84) 전계 “‘황군’병사가 된 조선인” 138쪽.

의 적령자(약 20만 명)의 20%는 일본어를 이해할 것이므로 합격률을 60%로 하면 24,000명을 징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⁸⁵⁾ 조선군은 병역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현행 지원병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술한 지원병 모집수의 증가는 이러한 요망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군은 징병제 도입 이유에 대해 위의 내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흥미있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조선인은 ‘지금은 문화적으로 향상해서 견식이 있고 활동력 있는 인물이 계속 생기고’ 있으나, 그들이 조선 내의 제 기관에만 ‘깊이 진입하여 교착’하게 되면 조선 통치와 방위상 ‘한심한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국외로 응비할 수 있게 도와 내지인과 함께 동아대륙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시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징병을 펼쳐 큰 활력을 부여하여 국군과 함께 대륙경영에 매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⁸⁶⁾ 이 맥락을 살펴보면, 조선군의 징병제 주장에는, 국내에 간혀 두면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조선인의 에너지를 국외를 향해 발산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조선군은 징병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절대 극비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동아전쟁의 개전 후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1942년 5월, 각의는 조선에 대한 징병제 시행을 결정하였으나, 조선총독부에게 있어 이것은 의외의 사건이었다.⁸⁷⁾ 또한 당시 육군성에서 병역문제를 담당하던 군인의 회상에 의하면, 조선 징병제 시행은 거국일치를 강화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⁸⁸⁾

징병 검사는 1944년도와 1945년도 2회 실시되었다. 징집된 조선인병사는 대부분이 조선의 부대에 배속되었지만 일본, 만주, 중국 등의 부대에 배속되는 자도 있었다. 입영한 조선인 병사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적지 않아, 병영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⁸⁹⁾

전쟁이 끝난 뒤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약 21만 명의 조선인이 육해군인으로서 동원되어 그 중 6,400명 정도가 사망하였다.⁹⁰⁾ 일본 본국의 동원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절대 수치로서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앞서 소개한 1938년 말의 조선군의 계산보다도 상당히 큰 징집수이다.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건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은 식민지인을 지원병으로 채용하는 점에서는 열국보다 늦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징병제를 실시했다는 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이기도 하였다. 지원병제도 도입은 처음부터 징병제를 향한 과도기적 조치로 여겨졌으나, 여기에는 군사적인 인적자원을 보완한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내선일여’를 지향하겠다는 식민지 통치상의 목표가 함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동아전쟁 개전 후에 예정보다도 서둘러 징병제가 실시되었을 때, 당면의 목적은 군의 인적자원의 보완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85) “조선군계시설희망요강송부의 건 통첩” 《육군성밀대일기》 쇼와14년 제4책 제1호.

86) 상동.

87)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 “황민화정책과 민족저항-조선에 있어서의 징병제도의 전개를 중심으로” 가노 마사나오·유이 마사오미(鹿野政直·由井正臣)편, 1982년, 《근대일본의 통합과 저항 4》 일본 평론사, 239쪽.

88) 다나카 요시오(田中義男), “조선에서의 징병제” 《군사사학》 8권 4호 (1973년 3월) 77쪽.

89) 상동, 80-81쪽.

90) 전개, “‘황군’병사가 된 조선인” 139쪽.

V. 나오며

조선주둔 일본군은 대러전에 대비하는 대외방위의 역할과 ‘반란분자’를 토벌하는 치안유지의 역할을 부여받아 출발하였다. 병합 후 2개 사단 증설 요구를 보면, 당시에는 전자가 주된 것이고 후자는 이에 종속적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를 때까지, 조선군의 행동 중점은 치안유지에 있었다. 대소방위가 본격적으로 생각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소련이 탄생한 직후인 1920년대에는 북방의 위협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점이 치안유지에 전념하는 여유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광송령사건, 제남사건, 만주사변, 중일전쟁에서의 중국, 만주로의 파견은 제국 확장의 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조선군이 항상 군사력으로서 계획, 준비, 훈련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응급으로 파병되는 측면이 많았다. 영국의 인도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파견된 것과 같은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식민지군이 식민지의 치안유지에 중점적 역할을 두는 것은 사실 어느 식민지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란분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진압하기 위해 주둔군을 사용하는 것 역시 일본의 조선 지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압하는 쪽과 저항하는 쪽 사이에 종종 폭력과 증오의 증폭 작용이 전개되었던 점도 마찬가지다. 단지 치안유지에 할애된 병력이나 기간이 처음의 의도보다 컸다면, 그만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의 경우는 조선군이 간도의 ‘불령선인’ 토벌에 큰 관심과 노력을 돌린 것에 재차 주목할만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조선군이 ‘불령선인’ 토벌에 고생을 하면서도 이에 대처할 유효한 방법을 개발하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독트린을 조선군은 갖고 있지 못했다.⁹¹⁾ 진압 행동이 때때로 혹독하였던 것은 이러한 점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의한 조선 통치의 이념과 주둔군과의 관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지원병제나 징병제의 채용을 둘러싸고 ‘내선일여’라는 통치이념과의 관계가 논의된 때였다. 지원병제나 징병제는 지금까지 조선인에 대한 강제성이나 인적 자원의 수탈이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념의 구체화에 대한 시도로서, 혹은 그 이념과 실태와의 괴리의 실례(實例)로서 새로운 시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91) 이 점은 적어도 제1차세계대전까지 다른 열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Douglas Porch, "Imperial Wars: From the Seven Years War to the First World War," in Charles Townshend, ed., *The Oxford History of Modern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115-116.

[別 表] 조선군의 편제(중일전쟁 전)

조선군사령부(경성)

- 조선헌병대사령부(경성)
- 진해만요새사령부(1905년 설치)
- 마산중포병대대(당초는 제20사단 예하)
- 영흥만요새사령부(1905년 설치)
- 나진요새사령부(1936년 설치)

제19사단(나남)

- 보병제37여단(함흥)
 - 보병제73연대(나남)
 - 보병제74연대(함흥)
- 보병제38여단(나남)
 - 보병제75연대(회령)
 - 보병제76연대(나남)
- 기병제27연대(나남)
- 산포병제25연대(나남)
- 고사포제5연대(나진)
- 공병제19연대(회령, 1936년 공병제10대대로 개편)

제20사단(용산)

- 보병제39여단(평양)
 - 보병제77연대(평양)
 - 보병제78연대(용산)
- 보병제40여단(용산)
 - 보병제79연대(용산)
 - 보병제80연대(대구)
- 동제3대대(대전)
- 기병제28연대(용산)
- 야포병제26연대(용산)
- 고사포제6연대(평양)
- 공병제20연대(용산, 1936년 공병제20대대로 개편)

제2비행단(회령, 1936년 설치)

- 비행제6연대(평양, 1925년 제20사단 예하에 설치)
- 비행제9연대(회령, 1935년 제19사단 예하에 설치)

[비평문]

정재정

이 논문은 조선군의 실태와 역할을 다른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군과 비교하면서 검토한 글이다. 그 결과, 조선군은 다른 식민지군과 마찬가지로 외적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과 국내 치안유지를 기본임무로 삼았는데, 아시아대륙에서 일본의 세력과 권익을 위협하는 러시아(소련)에의 대처를 ‘主’로 삼고, 조선에서의 치안유지를 ‘從’으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다른 식민지군과 달리 조선군은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군대였다. 다만 전쟁 말기에 조선인을 지원병·징병의 이름으로 다수 일본군에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內鮮一體’를 실현한다는 식민지통치의 목표가 함축된 것이었다.

이 논문의 장점은 종래 조선군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의 개략적 변천과정, 군사행동, 조선인의 入隊 등을 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인에게 징병제를 실시한 목적이, 성장하는 조선인을 국내에 가둬두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에너지를 국외로 발산시켜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卓見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이 논문은 조선군의 주요 역할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는데, 러시아의 위협이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 러시아의 위협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또 조선군이 일본의 조선지배에 음으로 양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논문의 주제에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

둘째, 이 논문은 조선인의 군대지원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탈출구가 별로 없는 조선의 어려운 상황도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이것은 조선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연구보다는 균형을 갖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좀더 본질적인 원인으로서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적 간여와 선전·선동 등을 좀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또 이 논문은 문장 중에 ‘종주국’ ‘반란’ ‘불온’ ‘반란분자’ 등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지배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용어를 오늘날의 논문에서 그대로 차용해도 괜찮은 것인가?

[집필자 답변]

1. 줄고에서는 창설기의 조선주둔 일본군의 주된 역할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 1920년대에는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이 완화되어 당초에는 부차적인 역할이었던 치안유지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 만주사변 이후에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어 조선군 본래의 역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소련의 위협을 일정한 것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선통치에 대한 조선군의 영향력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지적하신 바와 같다.

2. 조선인 군대지원(志願)자에 대해 총독부의 행정적 관여와 선전 선동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3. ‘중주국’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연구회에서 지적을 받았기에 될 수 있는 한 수정했다. 당시 사용되고 있던 용어는 원칙적으로 <>(번역문에서는 ‘ ’ 일 수 있음)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